

[일련번호 : 5]

# 양 천 구

## 시 정 요 구

**제 목**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내 용**

### 1. 업무개요

○○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에 따르면 사망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과태료)에 따르면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구분	법 제122조 위반 (신고의무)	법 제122조 위반(최고)
7일 미만	1만원	2천원
7일이상 1월미만	2만원	4만원
1월이상 3월미만	3만원	6만원
3월이상 6월미만	4만원	8만원
6월 이상	5만원	10만원

부과권자는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의2에 따른 대상자(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는 4분의 3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한다고 정하고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은 출생신고 지연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지연일자가 3월 이상 6월 미만인 대상자에 6월 이상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부적정하게 적용하여 1만원(자진납부 감경 시 8천원)을 과다부과하였다.

[표] 출생신고 등 과태료 부과 부적정 내역

연번	구분	대상자		신고자		신고내역		지연기간	부적정내역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발생일자	신고일자		
1						230116	230802	3월 이상 6월 미만	과다부과 (6월 이상으로 50,000원 부과, 40,000원 납부하였으나 6월 미만으로 40,000원 부과, 32,000원 납부해야함)

###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5. 조치할 사항

#### ○○동장은

과다부과한 출생신고 지연 과태료 8,000원을 환급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출생·사망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정)